

FSS/2112-26 : 자산수증이익 허위계상

- 쟁점 분야 : 자산수증이익 허위계상
- 관련 기준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 결정일 : 2012년
- 회계결산일 : 2011.1.1.~2011.6.30.

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 ‘회사’)는 가정용 전자기기 제조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계속사업 손실누적으로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실질심사 결과 상장폐지가 결정되었으나, 회사의 이의신청으로 5개월간 경영개선기간을 부여받아 ‘11년 6월 거래소의 추가적인 심사가 예정되어 있었다.

회사는 상장폐지를 모면하기 위해 ‘갑’으로부터 상장회사 B사의 신주인수권부사채(액면가 20억원, 이하 ‘BW’)의 현금화를 약속하고 동 BW를 증여받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이면약정을 통해 회사가 BW를 받는 대신 회사 대표이사가 ‘갑’에게 회사 신주인수권 3억원을 무상 양도하며 23억원의 수익을 약속하였고, 회사의 상장폐지 또는 주가하락으로 회사 신주인수권 행사가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증여받은 B사 BW를 반환하여야 하고, ‘갑’의 동의 없이는 동 BW를 인출이 불가한 에스크로약정 등을 체결하였다.

이후 거래소의 상장유지 결정으로 회사의 주식거래가 재개되었으나, 주가가 낮아 ‘갑’이 약정수익(23억원)을 얻지 못하게 되자 에스크로계약은 합의해지되었으며 회사는 B사 BW를 인출하여 ‘갑’에게 반환하였다.

회사는 이와 관련하여 ‘11년 1분기 재무제표에 B사 BW를 자산으로 계상하고 이를 자산수증이익 20억원으로 인식하였다.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는 BW 계약과 관련하여 ‘갑’에게 현금화 이면약정을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허위의 계약을 체결하고 ‘11년의 자산 및 자산수증이익을 허위계상하였다.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①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따르면,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제공된 정보와 이와 관련된 수익과 비용에 대해 제공된 정보는 발생한 거래나 그 밖의 사건의 실질을 충실히 표현해야 한다.

또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문단15에 따르면, 재무제표는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공정하게 표시해야 하며. 공정한 표시를 위해서는 '개념체계'에서 정한 자산, 부채, 수익 및 비용에 대한 정의와 인식요건에 따라 거래, 그 밖의 사건과 상황의 효과를 충실히 표현해야 한다.

② 금융감독원은 상장폐지를 모면하기 위해 상장폐지시 수증증권을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이면계약 및 증여자의 동의 없이는 인출이 불가한 에스크로계약 체결사실 등을 고려할 때 정상적인 증여계약이 아닌 허위계약에 해당하여 자산수증이익 과대계상으로 판단하였다.

4. 시사점

재무현황 등을 감안할 때 회사의 회계부정 및 오류의 가능성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상황에서 통상적이지 않은 자산수증거래 이익 등을 회사가 계상하는 경우, 감사인은 회사의 이면약정 등의 은폐로 허위계약 사실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도, 재무제표 이용자의 주의를 환기시켜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감사보고서 강조사항에 관련 사실을 기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재무제표 이용자는 감사보고서 강조사항에 기재되어 있는 회사가 통상적이지 않은 거래와 회사의 재무현황 등을 고려하여, 세심하게 재무정보를 이용할 필요가 있다.